민사집행의 본질과 특징에 대한 리해

박 철 남

민사집행의 본질과 특징에 대한 리해를 옳바로 가지는것은 민사집행과 관련하여 제기되는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는데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그것은 민사집행의 본질과 특징에 대한 리해를 바로하여야 민사집행활동에서 나서는 리론실천적인 문제들을 사소한 편향도 없이 법적요구에 맞게 정확히 풀어나갈수 있기때문이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법의 집행은 의무적이며 또 국가권력에 의하여 담보된다는데 그 중요한 특성이 있습니다.》(《김정일선집》 중보판 제10권 139폐지)

민사집행은 의무자가 확정된 판결의 의무리행을 거절할 때 국가권력에 의하여 강제 적으로 판결의 현실적실현을 담보하는 집행기관의 권력적활동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재판소에 제기된 민사사건은 재판심리에서 판결을 내림으로써 해결되게 된다. 그러나 재판소가 내린 판결이 곧 당사자들사이에 제기된 민사분쟁문제를 해결하기 위한민사소송의 최종적이며 완전한 종결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재판소가 재판심리를 거쳐 내린판결은 민사상권리에 대한 재판상확인에 지나지 않으며 권리의 실제적인 실현이 아니다.

물론 일정한 법률관계의 존재여부를 확인하는 확인소송에서는 판결이 채택됨으로써 소송이 완전히 끝나게 된다. 확인소송은 당사자들사이의 법률관계의 존재여부에 대한 재 판상확인을 목적으로 하는것만큼 당사자들은 소송에서 그 이상 요구하는것이 없으며 법 률관계의 존재여부에 대한 판결로서 소송은 완전히 종결되게 된다.

그러나 청구소송에서는 원고가 피고에게 어떤 재산을 넘겨주거나 어떤 행위를 하거나 하지 말데 대한것을 요구하는것으로 하여 원고의 권리를 실제적으로 실현시키는 문제가 중 요하게 제기된다. 물론 피고가 판결에서 확정된 의무대로 자기의 의무를 자발적으로 리행하 는 경우에는 이러한 문제가 제기되지 않지만 피고가 청구소송에 대한 판결의 리행을 거부하 는 경우에는 원고의 청구를 만족시키기 위한 소송을 계속하여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민사집행은 본질에 있어서 재판소가 내린 판결을 의무자가 제정된 기간안에 자발적으로 리행하지 않을 때 국가권력에 의하여 강제집행을 보장하기 위한 집행기관의 권력적활동이다. 다시말하여 민사집행은 민사집행기관이 확정된 판결, 판정을 근거로 하여 발급된 집행문에 따라 판결에서 확정된 의무자의 의무리행을 강제하여 권리자의 권리를 실현하는 권력적활동이다.

민사집행에서는 강제집행을 요구하는자를 권리자 혹은 채권자라고 부르며 의무리행을 강요당하는자를 의무자 혹은 채무자라고 부른다. 민사집행은 국가권력에 의하여 강제적으로 판결의 내용을 실현하는 활동이기때문에 강제집행이라고도 한다.

강제집행에 의하여 재판소에 제기된 민사소송은 최종적으로 종결되게 된다. 물론 판결에서 의무자가 의무를 자발적으로 리행하는 경우에도 소송은 종결되게 된다.

그러나 민사집행과 의무자의 자발적인 의무리행은 판결의 리행과 소송을 종결시킨다 는 점에서는 공통점을 가지지만 서로 구별된다.

의무리행은 판결이 확정된 후 의무자가 자발적으로 자기의 의무를 리행하는것으로서 그것은 국가의 강제력이 동원되지 않는 의무자의 자각적인 행위이다. 그러나 민사집행은 집행기관이 의무자가 확정된 판결의 의무리행을 거절하는 경우 의무자의 의무리행을 강제하여 권리자의 권리를 실현하는 활동으로서 국가의 강제력에 의하여 의무자가 의무를 리행하게 하는 강제성을 띠는 행위이다.

민사집행은 권리자의 신청과 민사법적효력이 발생한 법적문서를 전제로 한다.

일반적으로 민사집행기관이 집행활동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민사법적효력이 발생한 확정된 판결서나 판정서, 재결문과 같은 집행의 근거로 되는 법적문서와 그에 기초하여 발급된 집행문이 있어야 하며 강제집행을 하여줄데 대한 당사자의 신청이 있어야 한다. 강제집행을 하기 위하여 권리자는 반드시 재판소나 중재기관이 민사분쟁문제를 심리해결하고 발급한 실체법상권리가 존재한다는것을 확인하는 법적문서 즉 판결서나 판정서, 재결문을 근거로 하여 재판소에 강제집행을 신청하여야 한다. 재판소는 이러한 민사법적효력이 발생한 법적문서에 기초하여서만 집행문을 발급할수 있다.

집행기관은 권리자가 제출하는 민사법적효력이 발생한 판결서나 판정서, 재결서등본과 그에 기초하여 발급된 집행문을 접수하고 집행활동을 시작한다. 민사법적효력이 발생한 판결서나 판정서, 재결문과 집행문은 집행기관이 강제집행활동을 시작할수 있게 하는 유일한 근거이며 이러한 법적문서가 없으면 민사집행기관은 집행활동을 할수 없다. 따라서 민사집행은 권리자의 신청과 확정되여 민사법적효력이 발생한 판결서나 판정서, 재결서와 함께 이에 기초하여 발급된 집행문과 같은 법적문서를 전제로 한다.

민사집행은 형사집행, 행정집행과 구별되는 일련의 특징을 가진다.

민사집행의 특징은 우선 의무자의 의무리행거절과 권리자의 강제집행신청을 조건으로 한다는데 있다.

민사집행은 집행기관이 국가권력에 의거하여 강제적으로 의무자가 의무를 리행하도록 하는 법적절차이다. 권리자가 집행기관에 강제집행을 신청하는것은 의무자가 효력이 발생한 법적문서에 지적된 의무리행을 거절하여 자기의 실체법상권리가 현실적으로 실현되지 못하기때문이다. 만일 의무자가 자발적으로 의무를 리행한다면 권리자는 강제집행을 신청할 필요가 없으며 집행기관도 강제조치를 취할 필요가 없다. 그러므로 민사집행은 의무자가 자기의 의무리행을 거절할 때 거치게 되는 절차이다.

한편 권리자는 의무자가 의무를 리행하도록 요구하여 자기의 권리를 실현할수도 있고 자기의 권리를 포기할수도 있다. 그러므로 민사집행은 일반적으로 권리자가 강제집행을 신청하여야 시작되며 권리자의 신청이 없으면 집행기관은 집행활동을 하지 않는다. 집행활동이 시작된 후에도 권리자가 권리의 실현을 포기하면 집행기관은 집행활동을 중지하고 집행수속을 종결하여야 한다. 그러나 기관, 기업소, 단체사이의 재산상분쟁사건에서 권리를 포기하는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민사집행과 달리 형사집행은 판결, 판정이 확정되면 피해자나 피해자가족측의 판결, 판정을 집행하여줄데 대한 신청이나 피소자와 피소자가족측의 의사에 관계없이 국가권력 으로 판결을 집행하며 행정집행도 행정처벌결정에 따라 처벌받는자의 의사에 관계없이 즉시 집행한다.

민사집행의 특징은 또한 국가로부터 민사집행권한을 부여받은 기관에 의해서만 민사 집행활동이 시작된다는데 있다.

민사집행은 국가권력을 행사하는 활동으로서 반드시 국가로부터 민사집행권한을 부

여받은 민사집행기관에 의해서만 시작된다. 국가로부터 민사집행권한을 부여받지 못한 그어떤 기관도 민사집행을 시작할수 없다. 오직 국가가 민사집행권한을 부여한 기관만이 강제집행권을 행사하여 민사집행활동을 시작할수 있으며 강제집행조치를 취하여 의무자가자기의 의무를 리행하게 할수 있다.

민사집행권한이 없는 기관이나 개인에 의한 강제집행은 위법집행으로서 무효로 되며 해당한 법적책임을 져야 한다.

공화국민사소송법에서는 판결, 판정에 대한 집행은 그것이 확정된 다음 재판소집행원이 한다고 규제하고있다. 이것은 판결, 판정에 대한 민사집행은 그 권한을 부여받은 재판소집행원에 의해서만 시작되고 종결될수 있다는것을 의미한다.

물론 기관, 기업소, 단체의 재산에 대한 집행은 해당 은행이 하며 자녀양육비, 부양 료청구와 관련한 집행도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가 할수 있다.

그러나 이들의 집행활동은 철저히 집행기관의 집행위임을 받고 하는 활동이지 국가 로부터 부여받은 민사집행권한에 따라 하는 집행활동은 아니다.

민사집행과 달리 형사집행은 형벌의 종류에 따라 재판소집행원에 의하여 시작될수도 있고 해당 기관들이 집행기관으로 되여 집행활동을 시작할수도 있다.

행정집행은 권한있는 행정처벌기관의 결정에 따라 행정처벌을 집행할 해당 기관들에 의하여 진행된다.

민사집행의 특징은 또한 사람의 인신을 집행대상으로 하지 않는다는데 있다.

민사집행의 대상은 재산과 행위이며 사람의 인신에 대한 집행은 할수 없다.

민사분쟁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민사소송에서 원고는 재판소를 통하여 피고에게 어떤 재산을 넘겨주거나 일정한 행위를 하거나 하지 말것을 요구한다.

원고의 이러한 청구가 재판소의 판결로써 승인되는 경우 집행기관은 원고가 청구한 재산이나 행위에 대해서만 집행활동을 하게 된다. 따라서 민사집행에서는 피고가 판결에서 진 의무를 리행하지 않는다고 하여 의무를 리행할 때까지 피고를 구류하거나 채무대신에 일을 시키는것과 같은 사람의 인신을 그 대상으로 할수 없다.

민사집행과는 달리 형사집행은 사람의 자유를 구속하고 강제로동을 시키거나 사람의 생명을 박탈하는것과 같이 사람의 인신을 그 대상으로 한다. 일부 경우 즉 손해보상을 위 한 재산의 집행이나 재산몰수형에서의 재산이 그 대상으로 된다.

행정집행의 대상은 재산 혹은 행위일수도 있으며 사람자체일수도 있다.

실례로 행정집행에서 위법적으로 거래된 물자를 몰수하거나 위법행위에 책임이 있는 자에게 로동교양처벌을 주는것과 같은것을 들수 있다.

이와 같이 민사집행은 의무자가 자기의 의무리행을 자발적으로 리행하지 않을 때 권리자의 강제집행신청에 따라 국가로부터 민사집행권한을 부여받은 집행기관이 민사법적효력이 부여된 법적문서에 기초하여 판결이나 재결의 현실적리행을 담보하는 권력적활동이라는데 그 특징이 있다.

우리는 민사집행의 본질과 특징에 대한 리해를 바로 가지고 민사집행활동을 철저히 당정책과 법적요구에 맞게 진행함으로써 공화국민사집행제도의 우월성을 높이 발양시켜 나가야 할것이다.